

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19. 6. 15.(토) 시행하는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의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16일
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시험 일시 : 2019. 6. 15.(토), 10:00 ~

- 가. 5과목 : 10:00 ~ 11:40 (100분)
- ※ 장애인 편의지원(시험시간 연장)을 요구한 경우 10:00~12:30 (150분)

※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

2. 시험 장소

- 가. 시험장소 : “붙임1”과 같음
- ※ 동일 모집단위라도 시험장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으니, **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응시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- 나. 장애인 등 편의지원 내용 : “붙임2”와 같음

3.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**2019. 7. 12(금), 충청북도 홈페이지(<http://www.chungbuk.go.kr>) '시험채용'란에 게시합니다.**

4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안내

- 가. 당해 시험에 있어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 (2019. 6. 14.)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5일 이내에 “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<http://local.gosi.go.kr>”에 가산점이 유효하게 등록(입력)되어 있어야만 관계기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 후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가산점 등록기간 : 2019. 6. 15. ~ 2019. 6. 19.

- 나. 발급받은지 오래된 자격증은 그동안 법령 개정으로 자격명칭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자격명칭을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2012년 1월 1일부터 워드프로세서 시험이 단일등급화 되어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가산점은 단일등급 및 舊 1급 소지자에게만 부여됩니다. 워드프로세서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자격증 확인사이트 :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(☎1644-8000, www.q-net.or.kr) 등
- 다.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(지)청 보훈과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의 여부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(2019. 6. 14.) 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
5. 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안내

- 가. ‘조정점수제’ 도입 취지
 - 조정점수(표준점수)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점수입니다.
 -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선택과목이 도입됨에 따라 과목 간 난이도 차이 발생 시 득점하기 쉬운 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나 수험생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 - 조정점수는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해 줍니다.
 -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,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,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.
 - 선택과목이 도입된 국내시험 대부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.
 - ※ 대학 수능시험('99년 도입), 사법시험('08년 도입), 공인노무사('11년 도입), 8급 및 9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('13년 도입)
- 나. 조정점수제 적용
 -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(8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)에 따라 산출 적용합니다.

- 해당과목을 선택한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계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합니다.

$$\{(\text{응시자의 점수}-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})\div\text{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}\}\times 10+50$$

- 과락기준
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% 이상일 경우(40점 이상) 과락을 면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.
(예시) 사회 ① 원점수(35점), 조정점수(41점) ⇒ 과락 아님
 ② 원점수(40점), 조정점수(37점) ⇒ 과락 아님
- 가산점 부여시기
원점수와 조정점수를 산출하여 과락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.

6. 응시자 준수사항

[일반사항]

- 가. 시험당일 **09:20까지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**(07:30 이후 시험실 개방)
- 나.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**(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<http://local.gosi.go.kr> 에서 출력가능)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을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 - 신분증 인정범위 : **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중 하나**
 - 공무원증, 장애인등록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- 응시표에 기록(메모)를 해서는 안됩니다.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- 다.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**하여 답안을 정정 할 수 있으니,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**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마. **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(카페인·탄산음료 등)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건강

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**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**

※ **시험실 내에서 소변 등 응변해결요구는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어 수용 불가합니다.**

- 바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응시자가 작성, 제출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.
- 사. 시험전일까지 **시험장 위치, 교통편, 이동소요 시간을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- 아.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잔디운동장인 경우 운동장 내 주차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, 특히 비가 올 때에는 운동장 사용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.
- 자.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불펜 똑딱 소리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는 **휴연을 할 수 없으며**,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차.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.**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(시험실 내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해서는 안됨) **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.**
 - ※ **시험시간 중에 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산기기(휴대폰, 태블릿 PC, 스마트시계, 스마트밴드, 이어폰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)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- 카. 비공개 문제를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시험종료 후 비공개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. 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비공개 문제 및 답안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·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타.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.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방송 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- ▶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니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(표기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기타 궁금한 사항은 총무과 교육고시팀(☎043-220-253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필기시험 장소 1부.
2. 장애인 등 편의지원 응시요령 및 대상자 안내 1부.
 3. 답안지 견본 1부.
 4. 확대답안지 견본(표기형) 1부.
 5. 확대답안지 견본(기입형) 1부.